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소관)

2002. 10. 5

복 지 도 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9. 2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 9. 28.

다. 상정일자 :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02. 10. 1) 상정, 심사, 의결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2002. 10. 2) 상정, 심사, 의결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2002. 10. 4) 상정, 심사, 의결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2002. 10.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건소행정과장 김경숙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나. 주요골자

- 2002년도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 고
계		185,871,797	168,136,543	17,735,254	
일반회계		151,747,012	136,963,688	14,783,324	
특별회계		34,124,785	31,172,855	2,951,930	
구분	의료보호기금	57,314	38,212	19,102	
	주차장	34,067,471	31,134,643	2,932,828	

-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 고
총 계		46,018,941	44,635,837	1,383,104	
사회복지과	계	27,503,564	26,236,212	1,267,352	
	사회복지	1,198,215	1,185,816	12,399	
	저소득 주민보호	12,653,586	11,173,307	1,480,279	
	가정복지	7,085,206	9,657,032	-2,571,826	
	여성복지	34,060	34,060	0	
	청소년복지	439,240	428,327	10,913	
	유아복지	6,093,257	3,757,670	2,335,587	
산업위생과		3,227,764	3,227,748	16	
환 경 과		680,461	679,061	1,400	
청소행정과		14,607,152	14,492,816	114,336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계	4,126,591	4,069,232	57,359	
보건행정과	3,101,929	3,101,799	130	
보건지도과	865,879	813,463	52,416	
의약과	158,783	153,970	4,8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우리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1,747,01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963,688천원 대비 10.8%에 해당하는 14,783,324천원 증가하였음.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6,018,941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4,868,874천원)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4,635,837천원 보다 1,383,104천원 증가하였음.

o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법률제6024

호)에 의한 수급권자 생계주거비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의 일환으로 계상된 노인거리봉사 활동비,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건물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등이 계상되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댄스, 노래, 보컬 등의 경연대회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청소년예술제 사업이 마포구 청소년지도회로 민간 이전되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인 보육시설(국·시비보조사업)운영비와 구립 보육시설매입비(도화2동) 등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별 하반기 청소평가에 따른 우수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연금과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o 가정복지 세항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2,973,09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2000.1.12법률제6124호)제9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국비:50%, 시비:35%, 구비15%)으로 2001년도에 우리구 경로연금 지급액은 687,421천원임.
그러나 2001년 11월 서울시로 부터 "2002년도 마포구 경로연금 가내시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지침에 의거 불가피하게 2002년도 경로연금 예산액을 국·시비 포함 5,199,106천원으로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음.
2002년 1월 서울시로 부터 2002년도 마포구경로연금 확정예산 2,226,015천원(국·시비 포함)이 통보되어 제1회 추경에서 경로연금 예산액 5,199,106천원 중 2,973,091천원 감액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계속된 문제점 지적에 따라 2002년 9월 25일 서울시로 부터 재조정된 경로연금 예산액 764,242천원(국·시비 포함)이 통보된 바 있어 감액 편성된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가정복지 세항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개·보수비 등 95,000천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건물(면적 389.43㎡)은 '94년 5월 준공된 이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건물 옥상 방수의 미비로 1, 2층이 누수가 되고 지하에 물이 차고 습기가 심하여 체력단련실 등 건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추경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연도 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으며 동절기 공사에 의한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2층 강당에 사용할 물품구입비 5,000천원의 예산도 개·보수가 끝나는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성이 있어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가정복지 세항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2개소)로 1,520천원 편성하였음.

2002년 9월 현재 경로당 수는 90개소(구립:35개소, 사립:55개소)이나 대흥동 세양아파트 경로당이 9월 등록예정에 있고 사립경로당 추가 등록 발생을 감안하여 2개소의 운영비(A급:67㎡이상 사립기준)를 반영하였으나 4개월분 중 2개월분은 감액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관리 세항 경상적경비에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7,700천원을 편성하였음.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2002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제7조관련)" 중 일부 부과금액을 현행 과태료의 2배로 개정(1차위반 기준)한 바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제4항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0원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민신고 포상금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임.

2002년 9월 1일 현재 주민신고 포상금 집행잔액은 1,560천원으로 산출기초와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관리 세항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수해쓰레기 처리 집행잔액 4,035

천원을 편성하였음.

수해쓰레기 국고보조금은 2001년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임.

우리구에서는 2001년 7월 183톤의 수해쓰레기가 발생하여 처리(매립지 반입:177톤, 반입불가폐기물위탁처리:6톤)하였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전액 불용하였는 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26,59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069,232천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57,359천원 증가하였음.
- 편성된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금 변경(증액)내시에 따라 가정간호과정, 방문간호직무교육비를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행성독감(무료)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65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1,560천원을 편성(국비:50%, 시비25%, 구비:25%)하였으며 국비, 시비보조금(증액) 4,680천원은 제22차 간주처리 하였음.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무료)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신규 교부된 사업(국비:50%, 시비25%, 구비:25%)으로 국·시비보조금 3,326천원은 제20차 간주처리 하였음.
- 국·시비보조금 집행결과에 의한 반환금은 보건행정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집행잔액과 보건지도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가족계획사업 집행잔액 등을 비롯하여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고, 의약관리에서는 보건소 이용 만65세이상 경로환자를 대상으로 원외약국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을 편성하였음.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인플루엔자 등 급·만성전염병 관리와 암,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치매환자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대상자 발굴 및 홍보 등 보건 진료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가능한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활복지국 소관 】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추가 편성한 사유는?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당초 본예산 편성시 복지부에서 1인당 9,700원이었으나 추가분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면적과 소유는?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7.8평 이며 마포구 소유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개· 보수 내역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지하 및 외벽 방수공사와 창호 교체공사 등임.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공덕2동 익수 노인정은 아직까지 부엌이 재래식임. 복지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방안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점차 보수토록 하겠음.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의 내역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의자 구입비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대한노인회 개· 보수비로 조명, 벽지 등을 현대식으로 하기 바람.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최선을 다 하겠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노인거리봉사활동 내역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강화버스터미널→ 신촌로터리→ 농협신촌지점 까지 청소를 실시하는 시범 사업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청소년예술제 추가발생 내역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당초 추정인원이 500명 정도였으나 1,000명으로 확대실시 예정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보육시설(유아원)은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야간에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내년부터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중임.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의 보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보사동우회에서 자립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는 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람.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최선을 다하겠음.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대한노인회 건물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함.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수리후 관리 주체를 선정하겠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내역은?
○ 답변요지(정원배 산업위생과장) : 주민등록이 우리구에 되어 있는 농가 2세대에 대하여 벼보급종(씨앗)구입비를 kg당 5,010원, 3kg 보조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동네 뒷골목 청소평가 방법은?
○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행정과장) :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상태, 과태료 부과현황, 동별 선정한 취약지역 청소상태, 주민 10가구 선정 주민 홍보내역을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에서 추천한 회원들이 평가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평가 기간은?
○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행정과장) : 10. 7일 ~ 11.23일 까지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평가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월드컵시범사업화장실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사유는?
○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행정과장) : 집행기금은 전액 시비로서 당초는 신축 예정이었으나,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로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생활폐기물 1톤당 처리에 따른 주민 부담율은?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행정과장) : 75 % 정도임.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우리구 환경단체 현황은?
○답변요지(김병위 환경과장) : 5개 단체임.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수해쓰레기 처리 집행사유 발생 내역은?
○답변요지(정상택 청소행정과장) : 2001년도 편성된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서 2001.12.11일 예산이 전도되어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게 되었음.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운영 집행내역에 대하여 별도 자료제출 바라며, 차후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 하기바람.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명심하겠음.

【 보건소 소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가정간호과정, 방문간호 직무교육이란?
○답변요지(강수경 보건지도과장) : 간호사의 직무교육 과정의 하나임.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모자보건사업 내역은?
○답변요지(강수경 보건지도과장) : 미숙아, 선천성기형아 1인에 대하여 300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임.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65세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은?.
○답변요지(하현성 의약과장) : 약제비가 10천원 미만일 경우 1,200원을 지원하며, 2001년도 14,820명 지원하였음.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의 범위는?
○답변요지(강수경 보건지도과장) : 65세이상 저소득층이였으나, 61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일반인과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음.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어린이가 접종 대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답변요지(강수경 보건지도과장) :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국·시비 예산중 불용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니 홍보 및 의료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란?

○ 답변요지(강수경 보건지도과장) : 만성신부전증환자, 크론병, 베체스병, 혈우병, 거셔병 등 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의견서 첨부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의견서

(단위 : 천원)

구 분	항목별	제 출 (안)	조 정 (안)	증(△)감	비 고
사 회 복지과	일반보상금 (P 103)	○경로연금 ——— △ 2,973,091	○경로연금 ——— △ 4,428,994	△ 1,455,903	
	민간이전 (P 104)	○경로당운영비 ——— △ 1,520	○경로당운영비 ——— △ 760	△ 760	
	물품취득비 (P 104)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물품구입 --------- △ 5,000	(삭 감)	△ 5,000	
계		△ 2,966,571	△ 4,428,234	△ 1,461,663	